

교육만족도조사 운영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 만족도 조사 및 지속적 관리를 통해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대학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의 교육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, 분석, 평가 및 개선 활동에 적용한다.<개정 2018.04.30.>

제2장 책임과 권한

제3조(주관부서) 만족도 조사의 주관 부서는 평가지원실로 하며,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(이하 “조사”라 한다) 계획 수립
2. 조사결과의 취합 및 종합보고서 발간

제4조(관련부서) ① 만족도 조사의 관련부서는 전 부서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만족도 조사 및 지원<개정 2018.04.30.>
 2.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실시<개정 2018.04.30.>
- ② 조사대상별 만족도 조사 계획의 수립, 조사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은 다음 각 호의 조사별 시행 부서에서 수행한다.<신설 2018.04.30.>
1. 재학생 만족도 조사: 교수학습개발센터<신설 2018.04.30.>
 2. 산업체 만족도 조사: 경력개발센터<신설 2018.04.30.>
 3. 학부모 만족도 조사: 평가지원실<신설 2018.04.30.>
 4. 지역사회 만족도 조사: 지역사회협력센터<신설 2018.04.30.>
 5. 졸업생 만족도 조사: 학생처<신설 2018.04.30.>
 6. 교원만족도 조사: 교무처<신설 2018.04.30.>
 7. 직원만족도 조사: 총무처<신설 2018.04.30.>

제3장 업무절차

제5조(조사계획 수립) ① 주관부서장은 매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배포한다.

② 조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조사의 목적 및 적용범위
2. 조사대상업무 또는 부서
3. 조사시기
4. 조사방법

제6조(조사실시계획 수립) 관련부서장은 조사계획에 따라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다음 사항이 포함된 조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평가일정
2. 평가대상
3. 평가기준 및 방법
4. 기타 필요한 사항

제7조(조사 실시) 관련부서장은 조사실시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.

제8조(조사의 구분) 재학생 만족도 조사는 종합 만족도 조사와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로 나누며 필요에 따라 조사계획외의 업무 부서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9조 삭제<2018.04.30.>

제10조(조사 및 보고) ① 시행부서장은 조사자료를 분석·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 후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주관부서는 각 부서의 조사결과를 취합·정리하여 종합보고서를 발간한다.

제11조(사후관리) ① 관련부서장은 조사결과를 차기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시정 및 예방 조치 또는 개선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, 필요할 경우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, 학과 발전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주관 부서장은 관련 부서의 개선계획과 개선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아 수합하고, 그에 따른 개선보고회를 개최한다.<신설 2018.04.30.>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은 기획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개폐할 수 있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